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난민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난민 관련 정부 부처들에 난민의 처우와 관련한 131가지 정보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그 중 비공개 된 정보는 54건으로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였습니다. 2개의 정보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이에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국내 난민 처우 현황(2017. 12. 31기준)을 정리했습니다.

**PART.3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2018.01.12(공개), 2018.03.16(공개), 법무부 난민과, 2018.02.05(공개))

**간단히 보는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  |  |
| --- | --- |
| **66%**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지난 3년 평균 이용률입니다. |
| **0.3%-30%** | 2017년 1년간 난민신청자는 9,942명, 재정착 난민은 30명입니다. 신청자의 0.3%를 차지하는 재정착 난민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 인원의 30%를 차지합니다. |
| **42%** | 이용자 103명 중 44명이 중도 자진 퇴소했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42%입니다. |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령은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 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전경 (사진출처 : 대한민국정책기자단)[[1]](#footnote-1)

한국 정부는 2015~2017년 3년간 재정착 난민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난민신청자들보다도 재정착 난민들의 초기적응을 돕는 용도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난민신청자는 9,942명, 재정착 난민은 30명으로 신청자의 0.3%를 차지하는 정도지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의 30%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2]](#footnote-2)

**[그래프1]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재정착난민 비율**

(단위: 명, %)

**[그래프2] 2017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률**

(단위: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우선 이용자를 가려서 받아야 할 만큼 이용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재정착 난민을 빼면 실제 신청자들만의 이용률은 50%를 넘지 않는 마당에, 단 한 번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아래 [그래프3]은 연도별 이용률을 보여줍니다.

**[그래프3] 연도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률**

(단위: %)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매년 60퍼센트대의 이용률을 보입니다. 이마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이용률은 평균 48.5%로 뚝 떨어집니다. 애초에 천 명 단위가 넘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고, 영종도라는 입지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며 ‘수용시설이 될 뿐’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강행하여 지은 시설입니다. 초기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신청자는 굳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의 적응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뿐더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6개월 이용한 뒤에도 실제 생활에의 적응은 센터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센터 입주는 실제 적응을 6개월 미루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센터 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의 운영목적이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지어진 것인 만큼 이제는 센터의 운영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로부터 ‘시설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설립 초기부터 있었고, 이에 대응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 연수 및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으나, 실적은 초라합니다.

 **[표1]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예산집행 상세내역**

(단위: 천원)

|  |  |  |
| --- | --- | --- |
| **분류** | **금액** | **항목 상세** |
| 자원봉사자 활동비 | 34,410 | **-** |
| 난민어울림 행사비 | 5,110 | **-** |
| 현수막 | 430 | **-** |
| 보호경비 (지급품 등) | 12,160 | **-** |
| 청소 용역비 | 106,670 | **-** |
| 인건비 | 1,005,320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
| 난민생계비 | 816,960 | 난민신청자 생계비 |
| 구료비 | 177,550 | 입소난민 식대 및 의료비 |
| 시설장비유지비 | 48,080 | 승강기,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유지보수. 구축물 및 비품 수리 및 관용차량 수선유지비 |
| 재정착난민주거지원비 | 136,600 | 재정착난민 정착지 보증금 및 월 임차료 |
| 일반수용비 | 63,480 | 사무용품, 인쇄비, 홍보물비, 소모성물품,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 | 85,470 |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통신, 우편요금 등 |
| 기간제직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 58,560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및 기간제퇴직금 |
| IOM위탁계약 | 50,710 | 재정착난민 입국비용(항공료, 선발비, 건강검진비, 사전교육비 등) |
| 기타 | 31,200 | 비상대기숙소 |
| 5,540 | 맞춤형복지 |
| 48,560 | 관용차량 유류비 |
| 8,220 | 공식행사 등 업무추진비 |
| 33,820 |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과비, 기타운영비 등 |
| **총계** | **2,622,180** |  |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총 집행예산액은 28억에 달하지만 (2,835,580,000원) 전체 신청자/인정자의 2%도 이용하지 못합니다.[[3]](#footnote-3) 법무부의 난민 관련 행정이 더는 소수의 신청자, 재정착 난민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이미 신청 절차에서부터 생계비신청, 의료비신청 등 처우에 관한 정보들에서 소외되어왔습니다. 정보 자체가 상세하게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는 것이 제도의 큰 구멍입니다. 신청자뿐일까요? 인정자들에게도 난민 인정 이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용도는 다시 고민해 마땅합니다.

 **[표2-1]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교육 현황**

(단위: 일,시간)

|  |  |  |  |  |  |
| --- | --- | --- | --- | --- | --- |
| 대상 | 과목 | 운영 방식 등 | 교육일수 | 총 교육시간 | 비고 |
| 재정착난민 | 한국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월~금, 일 3시간(09:00~11:50)  | 194 | 582 |  |
| 한국사회문화 | - 주4회(월~목), 일 2시간(13:30~15:30)  | 153 | 306 |  |
| 음악심리치료 | - 주1회, 일 2시간, 3개월과정 | 15 | 30 | 현재종강 |
| 푸드아트테러피 | - 주1회, 일 2시간, 3개월과정 | 12 | 24 | 현재종강 |
| 정보화교육 | - 주1회, 일 2시간(15:30~17:30), 3개월과정 | 40 | 80 |  |
| 난민신청자 | 한국어 | - 주5회(월~금) 일 2시간(09:30~11:20)- 3개반(자모반, 초급반, 중급반) 운영 | 243 | 486 |  |
| 한국문화 | - 주3회(화~목) 일 1시간(13:30~14:20)- 3개반(자모반, 초급반, 중급반) 운영 | 146 | 146 |  |
| 공통 | 기타  | - 취미반 특별활동, 생활범죄예방특강, 원예테러피 등  | 52 | 104~208 |  |

**[표2-2]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교육비 상세 집행내역**

(단위: 천원)

|  |  |  |
| --- | --- | --- |
| 구분 | 교육 내용 | 금액 |
| 재정착 난민 | 한국어 | 27,450 |
| 사회문화 및 특강 | 9,380 |
| 한국어 집중교육 | 2,400 |
| 일반 난민신청자 | 한국어 | 45,810 |
| 사회문화 및 특강 | 21,690 |
| 합계 | 106,730 |

위의 [표2-1]와 [표2-2]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교육 커리큘럼과 현황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만 좀 더 세밀한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아닌 ‘인정자’에 대한 차별화 된 교육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확정을 받은 인정자에게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라 치더라도, 문제는 이 또한 재정착 난민이 아닌 난민 인정자에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4]](#footnote-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월별 이용·퇴소 현황은 아래 [그래프4]와 같습니다. 이용신청자 총 104명 중 103명이 허가 받았고, 1명은 불허 받았습니다. 불허 사유는 ‘입주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 유지능력, 취업 활동 여부, 동반 가족 유무, 임신·질병 또는 장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의 경우는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음’ 입니다.

**[그래프4]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월별 이용·퇴소 현황**

(단위: 명)

**[그래프5] 2017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거주기간**

(단위: 명)

[그래프5]는 이용자 거주기간입니다. 총 103명의 이용자가 평균 5개월 동안 센터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하되,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기에 7~9개월까지의 이용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5]](#footnote-5)

**[표3] 연도별 입퇴소자 현황 및 중도자원퇴소자 현황**

(단위:명)

|  |  |  |  |
| --- | --- | --- | --- |
|  | **이용자** | **퇴소자** | **중도 자원퇴소** |
| **2015** | 109 | 132 | -[[6]](#footnote-6) |
| **2016** | 114 | 106 | 62 |
| **2017** | 103 | 101 | 44 |

신청 후 6개월까지 취업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초기 6개월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디서 잠을 잘 것인지,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되는 생계비 예산마저 전체 신청자의 8%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숙식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신청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의 우려대로 생활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채, 자신의 난민 요건을 심사하는 주체인 법무부 운영의 센터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난민신청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지원과 비 이용자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모든 신청자와 인정자에게 같은 수준의 정보와 지원을 전달할 것인지- 난민법 5주년을 앞둔 지금, 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할 때입니다.

작성: 난민인권센터, 이슬

1.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8.06.07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1282&pWise=main&pWiseMain=A26 [↑](#footnote-ref-1)
2. 재정착 난민의 출입국지원센터 이용에 대하여는, 이후 재정착 관련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footnote-ref-2)
3. 2017년 신청자 9,942명 기준 [↑](#footnote-ref-3)
4. 재정착난민의 출입국지원센터 이용에 대하여는, 이후 재정착 관련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footnote-ref-4)
5. 상세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대기중 [↑](#footnote-ref-5)
6. 데이터없음 [↑](#footnote-ref-6)